#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88 제출연월일: 2024. 12. 18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(移葬)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 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본문 중 "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"을 "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 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5항제4호의2 및 제5호"로 한다.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

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립묘지 이장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이장) ① (생 략)	제7조(이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	②
시신이나 <u>유골(자연장지에 안장</u>	유골(자연장지에 안장
된 유골은 제외한다)은 그 유족	된 유골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	에서 같다)
외의 장소에 이장한다. 다만, 이	
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	
장할 수 없다.	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제1
	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장
	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
	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
	로서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
	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
	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
	있다.
제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(死	②
後)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	
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	
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	
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	
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	

지에	관현	· 결	정을	해줄	것을	생
전(生	前)。	게 국	가보	훈부	장관에	게
신청학	할 수	- 있	다.			

- 1. (생략)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- 가. 제5조제1항제1호차목·타 목·파목 또는 같은 조 <u>제</u> 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 람

나. (생략)
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
- ③ ④ (생 략)

제16조(안장비용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용은 유족이 부담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
Δ.
가
제
<u>7항</u>
나. (현행과 같음)
– –
3
제5조제5항제4호의2 및 제5호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안장비용) ① (현행과 같
<u>♥</u> )
②
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
	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
	시신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
	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